

교원신규임용공개채용심사지침

제정	2012. 3. 1.
개정	2014. 1. 1.
개정	2016. 3. 1.
개정	2017. 11. 27.
개정	2019. 6. 17.
개정	2023. 9. 18.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학교법인 청강학원 정관 제39조의3과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6조(신규임용)부터 제14조(기타)에 해당되는 신규임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규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범위) ①교원 공개채용 신규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본 지침은 전임교수, 강사, 비전임교수인 초빙 및 겸임교수 신규임용에 적용한다.

제3조(채용구분)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정관 제39조의5와 교원인사규정 제6조 제7항, 강사인사규정 제14조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제4조(교원충원계획수립) ①교원 신규임용을 위해서는 교원충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교원충원계획은 각 스쿨에서 제출한 충원계획에 의거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③교원충원계획은 교육과정의 개편이나 모집정원 증원 등으로 신규 채용 수요가 발생한 경우,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 부분, 대학의 교원확보율과 모집단위별 확보율 등을 감안하여 수립한다.

제5조(공고) ①수립된 교원충원계획에 의거 교원을 공개로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학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최소 15일 이상(강사는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교수채용 공고이후 심사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특정지원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제6조(지원자격) 교원인사규정 제5조(강사는 강사인사규정 제3조)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7조(공개채용 심사절차) ①신규임용의 공개채용 심사는 예비심사, 서류심사(기초 및 전공심사), 공개강의 심사, 면접심사 순으로 진행한다.

②학교법인청강학원 정관 제39조의3 제3항에 의거 필요한 경우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예비심사는 원활한 서류심사 등을 위하여 교원인사담당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④ 강사의 신규임용을 위하여 스쿨에 “강사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심사 및 서류심사(기초

및 전공심사) 등을 실시한다.

제8조(예비심사) ①예비심사는 지원자들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 공고 자격 미달자가 불필요하게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심사단계이다.

1. 임용지원서에 인적사항, 연락처, 학력사항, 경력사항 등의 기본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 기본 공고 자격에 미달한 자
2. 학력, 경력 등의 증빙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
3. 기타 임용지원서 만으로는 지원 사항이 불명확한 자
4. 지원서 작성 후 응시취소 한 자

②예비 심사는 교원인사담당부서에서 실시하여 서류심사(기초 및 전공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이때 대학의 채용심사시스템에서 '서류심사 기준자료 생성'의 방법으로 실시 한다.

제9조(서류심사 절차) ①서류심사는 관련 서류를 기일 내 제출한 자에 한해 실시한다.

②서류심사는 기초 및 전공심사로 지원자의 전공과 모집 전공분야의 일치여부 및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과 교육능력을 심사한다.

③서류심사를 위한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는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타 대학 교수 중 스쿨원장의 추천과 외부의 추천 절차를 거쳐 위촉기간을 정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단, 심사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본 대학 법인의 임직원과 본교의 교수 및 직원이 아닌 자로 위촉한다.

④심사위원회는 서약서(서식 1)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서류심사는 전공적부, 학위, 교육경력, 실무경력, 자격소지, 연구실적, 우대사항 등에 대한 정량평가와 학문적 우수성과 교육적 능력 등에 대한 종합평가로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⑥해당 스쿨원장은 제5항을 참조하여 세부심사기준(서식 2)과 배점기준을 확정, 교원인사담당 부서가 요청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세부 심사항목과 배점기준은 모집분야의 세부자격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⑦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 후 해당 평가카드와 평가표를 출력하여 서명날인한 후 인비로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⑧서류심사는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자를 공개강의대상자(공개강의를 하지 않을 경우 면접대상자)로 선정하고 서류심사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한다. 대상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되지 않은 지원자는 서류심사로 공개채용심사가 종료된다. (개정 2017.11.1.)

⑨ 제2항 내지 제8항에도 불구하고 강사를 신규임용할 때에는 해당 스쿨 소속 교원으로 “강사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며, 강사인사규정의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제10조(서류심사 세부기준 및 방법) ①전공적부는 모집분야와 지원자의 전공분야와의 일치도를 심사하는 것으로 지원자의 (전문)학사, 석·박사 과정의 동일계 여부 및 최종 학위 논문이 모집분야와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여 심사하며, 전공적부심사는 적합과 부적합 중 선택하여 서류심사 심사위원 2/3

이상 또는 강사임용심사위원회에서 적합으로 판정한 자에 한해 서류심사를 진행한다. 단, 지원자의 전공분야를 판단할 때 학위가 모집분야와 동일계열이 아니거나 최종 학위 논문이 모집분야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연구경력, 교육경력, 산업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공 적합 및 부적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교육경력은 대학강의만 인정되며 실무(산업체)경력도 모집분야 관련 산업체만 인정한다. 교육경력과 산업체경력 중복시 유리한 1곳만 인정한다. 단, 예체능계의 실무경력도 작품제작 경력을 포함한다.

③자격소지는 관련 자격증 소지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④연구실적물 심사는 교원인사규정 제6조제5항, 제6조제9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심사한다.

1. 연구실적의 범위

가. 논문은 전공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의 체제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나. 연구실적물은 다음과 같이 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일간지 및 교내신문에 발표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1) 학위논문

2) 저서(출판된 것에 한함), 학회지, 논문집, 정기간행물(학술지로 공인받은 것에 한함),

3) 예·체능계에 있어서는 창작, 발표, 전시, 입상 등(예체능계의 입상실적을 별도로 인정할 경우, 연구실적물 심사에서는 제외한다)

2. 연구실적의 인정

가. 예·체능계 전공은 총장이 인정하는 실적조서와 증빙자료로서 대체할 수 있다.

나.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은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1회에 한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학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한 연구보고서는 논문으로 인정한다.

라. 담당과목과 관련된 현장프로그램 또는 산업체 프로젝트 참여와 특허취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한다.

1) 현장프로그램 참여나 산업체 프로젝트 참여기간이 1개월 이상 1건으로서 단독은 100%, 2인 70%, 3인 50%, 4인 이상 30%를 인정한다.

2) 특허발명 취득으로서 발명은 국제 1건 200%, 국내 1건 100%, 실용신안 1건 100%를 인정한다.

마. 다음 각 호의 연구논문은 연구자의 전공분야와 다르더라도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1) 전문대학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2) 직업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3) 산학협동(산업체 현장문제, 학생 현장실습 등)에 관한 연구

4) 학생 생활지도 및 취업지도에 관한 연구

3. 연구실적심사

가. 연구실적심사는 별표 1에 의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모집분야별로 연구실적물 범위와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 ⑥ 모집분야별 우대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 ⑦ 정성평가는 종합평가항목으로 지원자의 학력과 실무경력, 교육경력, 연구실적 등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고 의견을 기술한다.

제11조(공개강의심사) ①서류심사자 통과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의심사를 실시한다.

- ②공개강의심사는 전임교수 및 초빙교수 지원자에 한해 실시한다. 강사는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 ③공개강의심사표는 (서식 3)과 같다.
- ④공개강의심사는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자를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공개강의심사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한다. 대상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되지 않은 지원자는 공개강의심사로 공개채용심사가 종료된다. (개정 2017.11.1.)

제12조(면접심사) ①공개강의 통과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단, 공개강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만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면접심사표는 (서식 4)과 같다.
- ③면접심사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면접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진행한다.
 1. 전임교수의 면접심사위원은 총장, 교원인사부서장과 외부 전문가를 총장이 위촉한다.
 2. 비전임교수의 면접심사위원은 교원인사부서장, 스쿨 원장, 스쿨 원장이 추천한 심사위원 중 총장이 위촉한다.

- ④면접심사는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자를 최종 예비합격자로 선정하고 면접심사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한다. 예비합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되지 않은 지원자는 면접심사로 공개채용심사가 종료된다. (개정 2017.11.1.)

제13조(신원조사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①최종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신원조사에 이상이 없을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②교원인사위원회 심의가 종료된 후 총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로 최종 신규임용자를 확정한다. 단, 강사, 비전임교원은 총장이 최종 신규임용자를 확정한다.

제14조(임용처리) ①신규임용자는 임용 관련서류를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②임용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③임용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법, 기타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 강사인사규정, 교직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처리한다.
- ④ (삭제)

제15조(정보공개 의무) ①신규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신규임용자가 확정된 후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이를 공개한다.

②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거 지원자 및 심사위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와 개인별 심사조서 및 심사표, 정성평가 내용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본 지침 상에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기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한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 강사에 관한 사항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규임용 연구실적 심사표

연구실적		인정율	비고
학위논문	석사학위 논문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 30%	1)석사 2개, 박사 2개 이상시, 각 학위별 1개만 인정 2)석사,박사학위논문을 2인 공동명의로 발표한 경우 취득자 단독 논문으로 인정 3)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음
	박사학위 논문		
학술논문	학회지, 논문집,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1)학회지, 논문집, 정기간행물(학술지로 공인받은 것), 학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한 연구보고서 포함 2)SCI(E)급 학술논문지 게재 논문은 참여자수에 관계없이 100% 인정
저서	개인저서(출판물)		1)출판된 것에 한함
연구논문	연구논문		연구자의 전공분야와 다르더라도 인정함 1)전문대학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2)직업교육개선에 관한 연구 3)산학협동(산업체현장문제, 학생현장실습 등)에 관한 연구 4)학생 생활지도 및 취업지도에 관한 연구
현장프로그램, 산업체프로젝트	모집분야, 담당예정 과목과 관련된 현장프로그램, 산업체프로젝트 참여	단독수행 100% 2인 70% 3인 50% 4인이상 30%	1)참여기간이 1개월 이상을 1건으로 인정
발명특허	발명특허 산업재산권	발명 국제1건 200% 국내 1건 100% 산업재산권 1건100%	1)산업재산권은 의장, 실용신안, 상표 등을 포함
콘텐츠	국내외에서 공연된 작품(상업 및 공공지원 작품), 애니메이션, 영상물 등과 수상실적	주요 스텝(배역)100% 중간 스텝(배역) 70% 그 외 50% (편당) 국가공인(인정) 수상실적 100% (회당)	1)학생졸업작품지도로 진행된 콘텐츠제작은 제외 2)모집분야에 관련된 작품만 인정 3)작품 프로그램북,크레딧 등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4)인정범위는 프로듀서, 기획, 연기(주조 및 주조연급), 연출(감독), 감독(음악(보컬), 무대, 기술,디자이너 등), 작곡, 지휘 등임 5)순회공연(재공연 포함)의 경우, 중복 인정하지 않음(단, 경력기간은 인정됨) 6)작품의 규모와 역할에 따라 인정비율 조정 가능(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미술/음악	국내외 전시, 발표, 공모전 수상 등	전시 및 발표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 30% 수상경력 25% - 100%	1)전시 및 발표 규모와 역할에 따라 인정비율 조정 가능(심사위원회에서 결정) 2)정부주관 국제전, 전국규모 미술대전 (입선 50%, 특선이상 100%) 시도단위 공모전, 공인된 단체의 공모전 (입선 25%, 특선이상 50%) 3)학예술관계 및 창작실기활동 분야의 훈장(200%)

※예체능계의 입상실적을 별도로 인정할 경우, 연구실적물 심사에서는 제외함.

(서식 1) 심사위원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수초빙 공개채용 ()분야 심사위원으로 정실에 의한 심사를 하지 않고 공정하게 심사하며 심사결과를 일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심사결과의 누출 등으로 물의가 야기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감수할 것으로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성명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2) 서류심사기준 및 배점기준 양식

1차 서류심사(기초·전공심사) 심사 기준

모집구분		모집분야	
------	--	------	--

<정량평가>

구분	항목/점수	5	4	3	2	1	비고	
필수 사항	전공적부	적합 / 부적합 중 선택						
	학위							
	교육경력						대학강의만 인정	교육경력과 산업체경력 중복시 유리한 1곳만 인정
	실무경력						관련 산업체만 인정	
	자격소지						해당학과	
	연구실적						4년 이내, 신규임용 지침 참조	
우대 사항	우대사항 1						해당전공(공고문 참조)	
	우대사항 2						해당전공(공고문 참조)	

<정성평가>

항목/점수	5	4	3	2	1	비고	
종합평가						전반적인 경력, 연구실적 등에 대한 종합점수 부여	
종합의견	자율 기술					종합 심사의견	

()학년도 ()학기 교수임용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기준으로 1차 서류심사(기초 및 전공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스쿨명 :

스쿨원장 : (인)

청강문화산업대학 총장 귀하

※연구실적심사기준 별도 마련시 별첨

(서식 4) 면접심사 평가표 양식

교수임용후보자 면접평가표

면접대상자	지원스쿨	지원전공 (모집분야)				
	성 명	지원구분				
평 가 항 목		평 가 결 과 (해당점수에 V표시)				
		A (10점)	B (8점)	C (6점)	D (4점)	E (2점)
1. 본교의 특성에 대한 이해						
2. 교육관 및 적성						
3. 전문대학 교수로서의 정체성						
4. 교수로서의 품위, 인화력						
5. 의사소통(표현) 능력 및 면접태도						
6. 교수로서의 발전가능성						
득 점(계)						
종합의견						

위와 같이 교수임용 후보자를 면접평가 합니다.

년 월 일

면접위원 :

①